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84호 2012. 12. 31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16호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317호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7
○ 정선군 조례 제2318호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12
○ 정선군 조례 제2319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정선군 조례 제2320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 ····· 19
○ 정선군 조례 제2321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 31
○ 정선군 조례 제2322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38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03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16호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 · 법률고문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이나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정선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 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정선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 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정 선 군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 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자 문 사 항				처 리 결 과		
연월일	건 명	의뢰인	자문내용	연월일	고문인	처리내용

제 정 이 유

○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예산·결산안,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및 자치행정 사무관련 법률자문을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을 두는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와 고문으로 위촉된 자의 직무금지 사항 규정(제2조)
○ 정원과 위촉자격 및 해촉 사유 규정(제3조～제4조)
○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 사항 규정(제6조)
○ 입법·법률고문이 참석하는 회의 규정(제7조)
○ 위촉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제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17호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4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세무회계과장, 생태환경과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위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는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군수는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제14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사업의 대상범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이에 대한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철저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범위 규정(제3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규정(제4조)

○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규정(제5조～제6조)

○ 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동의, 보고서 제출 및 보고사항 등 규정
(제12조～제1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18호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4.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제 구축
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평가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선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정선군정신보건센터장
3. 정선군교육장이 추천한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 전문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하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군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제2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제5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제6조~제7조)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제9조)
○ 자살시도자, 가족에 대한 지원(제11조)
○ 자살예방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제1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19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을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 1 조 의 5 --.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정선군 복지기획담당 및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 ⑦ (생 략)	제3조(구성) ① ------------- --- 10명 이상 30명 이하-----_-------. ②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10명 이상 30명 이하--------- ----. 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⑥ ~ ⑦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지역맞춤형 복지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위촉직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 요 내 용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규정(제3조제1항 및 제4항)

○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제3조제3항)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20호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영업장(객석, 객실)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을 제공하는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해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한다.

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로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배출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해서는 아니 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봉투

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공동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군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건조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서)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제17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8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품목별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있는 것)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 (음식물종량제 봉투 및 전용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
공 통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비닐, 병뚜껑, 패각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활용 및 가축이 먹을 수 없는 물질
일 반	○ 밥 등 곡류, 김치 등 반찬류, 된장.고추장 등 장류, 빵, 과자 ※ 소금성분이 많은 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류 등은 물로 헹구어 최대한 물기 제거 후 배출	○ 비닐, 왕겨,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숟가락, 플라스틱, 끈,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마르고 딱딱한 물질
채소류	○ 모든 채소류 - 통무.통배추.통호박.통수박 등은 깍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파.미나리, 무청, 옥수수알맹이 - 양파.생강.감자.고구마 등의 껍질	○ 고추대, 고추씨, 마늘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생강껍질 ○ 통무, 통배추, 통호박, 통수박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과일류	○ 모든 과일류 - 파인애플 등 부피가 큰 것은 깍두기 형태로 썰어서 배출 - 사과.배.복숭아.참외.귤 등의 껍질	○ 호두.밤.도토리.코코넛.땅콩.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자두.살구.매실.감 등의 씨
육 류	○ 모든 육류의 살점.지방부분	○ 소.돼지.닭 등의 뼈와 털
어패류	○ 생선의 대가리.뼈.내장	○ 조개.꼬막.소라.전복.굴.멍게 등 패류의 껍데기, 복어내장 ○ 게.가재.새우 등 갑각류의 껍데기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티백) 찌꺼기 ○ 한약재 찌꺼기

※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물질은 일반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주 소(사업장)	(전화 :)		

⑥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영업장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건 조 처 리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 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⑱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⑲ 대행재활용 계 획 (계약서 첨부)	대행 재활용량	대행 계약비용	대행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대행업소 주소·전화
	kg/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대행업소명	대행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처리	kg/일					
자가재활용	kg/월					
대행재활용	kg/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뒷쪽)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처리방법은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⑫ 처리능력은 감량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⑭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⑮ 부산물 처리는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 부산물의 양과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⑱ 자가재활용계획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⑲ 대행재활용계획은 재활용업자에게 대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대행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고,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적습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대행재활용한 경우에 적고,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적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대행재활용하는 경우 대행업소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	kg / 년
발생억제방법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대행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대행량 (kg/일)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개 정 이 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제1조～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규정(제15조～제16조)
○ 발생억제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제17조～제18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선군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21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정선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정선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축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농산물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군 내 특정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품질보증 농특산물”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정성·진품성·기능성 등 그 품질을 보증한 것을 말한다.
5. “품질보증 상표”(이하 “보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작도법은 「별표 1」과 같다.
6. “품질보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물품의 규격 및 생산·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규격화한 것을 말한다.
7. “보증상표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보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정선군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농특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①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농특산물 품목의 표준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증상표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농특산물 등의 품질보증) ① 군수는 농산물·농산물가공품·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정선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에 대한 농산물·농산물가공품·특산물의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자 또는 영농법인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품질보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산·제조·가공·유통과정에 있어서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규격·품질 또는 보증의 요건 적합성 등의 여부
2.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산물의 재배·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성분검사 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증상표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상표 유효기간) ① 품질보증 농특산물(가공품 제외)의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농특산물가공품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보증 받은 품목의 생산을 10월 이상 중단 할 때까지로 한다.

제9조(판매지원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 여러기관 단체가 농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증상표가 표시된 농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농특산물은 군에서 추천하는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목적으로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보증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 보증상표 사용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및 표시기준을 지킨다.
3. 가공품의 주원료는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한다.
4. 보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5. 보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 등의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증상표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제7조제2항 및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당해 농가 또는 영농법인·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12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물품·포장재·용기·홍보전단 등에 보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군 보증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부담) ① 제5조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을 위한 성분분석·시험·검사 등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는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등의 수수료는 품질 확인을 위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실경비로서 성분분석·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검사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선군수 품질보증 상표 (제2조 관련)

1. 보증상표

○ 참아리는 실로 정말,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의 참과 순박하고 성실한 정선 군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정선아리랑의 아리와 결합된 품질보증 브랜드로,

○ 전체적 표현에 있어 정선의 청정자연을 이미지화하여 "정선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최고급 농산물 "이라는 명예와 찬사를 받기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였음.

2. 작도법

○ 품질보증 번호의 표기는 브랜드 상단에 위치 참아리 지정 서체인 윤고딕120을 이용 그리드 시스템 비례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표시사용

○ BI는 정확한 색상과 명도, 채도 등이 유지된 상태로 사용하되 전용색상은 제시된 4원색 규정에 의거 표현함

[별표 2]

판매촉진 및 홍보품목 제공 대상 및 범위(제9조제3항 관련)

대 상	범 위	방 법
① 농특산물 수출.입 관계자 및 임직원 ② 농특산물 유통 관계자 및 임직원 ③ 외교사절 및 우호 교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④ 유명 문화 예술인과 언론인 ⑤ 국내외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 ⑥ 기타 농특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품질보증농특산물	방문, 택배 등 제공 대상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제 정 이 유

○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정선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 요 내 용

○ 보증상표 사용의 적용범위(제3조)

○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4조)

- 품목선정, 품목의 표준규격 결정, 품질관리 및 마케팅 등 심의

○ 농특산물 등의 품질보증(제5조)

○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제7조)

○ 보증상표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0조)

○ 부정사용의 조치(제12조)

○ 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부담(제13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조례 제2322호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정선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안내소

제4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2.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3.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광통계 작성
4.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에 필요한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안내 콜센터(call center)

제8조(설치) 군수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관광정보 요청에 대하여 대표전화번호로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는 관광안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명칭 등) 콜센터의 명칭은 "정선군 관광안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위치) 콜센터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7-1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관광안내
2. 상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
4.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시설 및 장비) 군수는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무실
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
3.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13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가이드

제14조(선발) ①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선의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는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직무) ① 관광가이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방문객 관광안내 및 홍보
2.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현장 안내
3. 기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활동

② 관광가이드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활동을 한다.

제16조(교육) ① 군수는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가이드 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표식)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광가이드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관광가이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광가이드는 제1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관광객들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활동실적 관리) 관광가이드는 안내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가이드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관광안내 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지급
3. 선진지 비교시찰 활동 및 교육 지원
4.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관광안내 활동을 위하여 관내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가이드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문화관광해설사

제20조(직무 및 표식) ① 해설사의 직무, 표식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해설 및 안내활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실적 관리) ① 해설사는 안내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해설 및 안내활동에 필요한 근무복 지급
3. 선진지 비교시찰 활동 및 교육 지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해설 및 안내활동을 위하여 관내 박물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해설사에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및 안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20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관광객 유치 등 지원

제23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사업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지원사항) ①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각종 관광홍보물 지원

3.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가이드 등 관광안내요원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제2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여행사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행사에게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포상

제27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정선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관광안내소의 설치, 업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7조)
○ 관광안내 콜센터(call center)의 설치, 업무,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13조)
○ 관광가이드·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관리,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22조)
○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지원 규정(제23조~제26조)
○ 관광진흥에 대한 공적 포상 규정(제27조)

규 칙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12. 31.

정선군 규칙 제1203호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산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 출장소장,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품질보증 농특산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거나 심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 단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품목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품질관리원을 둔다.
② 제1항의 품질관리원은 품질보증 해당 품목의 담당부서 공무원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품질관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및 규격)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대상품목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수가 이를 지정·고시한다.
1. 청정이미지 등 정선군적인 품목
2. 진품여부 확인 및 정선산 원료사용이 가능한 품목
3. 품목의 거래량이 많고 상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품목
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 표준규격은 소관업무부서에서 작성하여 주무부서에서 위원회에 상정 확정하고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제8조(보증상표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농산물가공품·특산물을 보증받고 보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특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

류를 첨부하여 수확 또는 출하하기 70일전까지 신청한다.

가.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나.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마.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농특산물가공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가. 품질준수각서

나.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다.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보증상표 사용심사 등)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부서 공무원인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심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를 심사하게 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기준·방법 및 보증항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농특산물의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품질보증 항목 및 보증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행정구역명칭으로 보증하되, 신청자가 산·강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보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보증

나. 품명 : 공인된 명칭으로 보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 하거나 소비자가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보증

다. 생산연도 : 당해 품목의 생산연도로 보증

라. 성분함량 : 표시하고자 하는 성분함량은 검사평균치로 보증

2. 농특산물가공품 심사는 표준규격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며 공장심사, 품질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공장심사는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심사평가서에 의한다.

나. 품질시험은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

다. 품질보증 항목은 보증번호, 보증품목 및 규격, 상표 사용자의 명칭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주소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인증(보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표준규격의 각종 검사와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3.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보증 품목
4. 기타 품질이 인증(보증)된 것으로 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품목

제10조(보증상표 사용 심사절차 등)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농업축산과(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신청품목 담당부서에 심사실시를 통보한다.

1.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 주무부서
2.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 주무부서
3.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정책과
4. 기타 특산물 등 가공품은 주무부서에서 판단, 심사실시 담당부서를 결정한다.

②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시험소·산림개발연구원·강원대학교 농산물안전성전문분석실(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의뢰한다.

③ 시료채취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심사실시 담당부서는 현장조사 및 품질시험·성분검사 성적의 품질보증 표준규격 및 심사기준의 적합여부를 종합 판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보증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심사실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농특산물은 50일 이내, 농특산물가공품은 30일 이내에 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증상표 사용승인서의 교부) ① 군수는 품질보증 농특산물에 보증상표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별표 3」의 품질보증번호 및 부여방법에 의하여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품질보증번호를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증상표 사용승인 연장 및 재승인)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상표의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당해 보증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연장사용을 신청하는 자 및 사용승인 유효기간 내에 출하하고 조례 제10조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착실히 지키고 종전에 신청한 동일품목 및 방법으로 재배 또는 생산하고자 재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품질보증상표 표시방법 등) ① 품질보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표시사항 및 방법으로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 포장재, 용기 등에 원산지, 품명, 원료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산을 표시하여야 할 농특산물은 생산연도를 표시
2. 농특산물 등 물품, 포장재, 용기 등의 표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되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

② 보증상표 사용자는 사용승인 내용과 무관한 무공해, 저공해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내용품을 과장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성분분석·시험·검사 의뢰 시 보증상표 사용신청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채취한 검사시료와 납부한 검사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신청전에 검사시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출하실적관리)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은 당해 품목의 연간 출하실적을 영농·경영일지 등에 기록관리하여 반기별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출하실적을 집계하여 상반기는 8월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단 체 명			구 성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사육두수)		생산지역		생산계획량	
	생산(사육) 소 재 지					
신청내용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1부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빙서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성분분석·시험·검사 경비는 신청인 부담)

(뒷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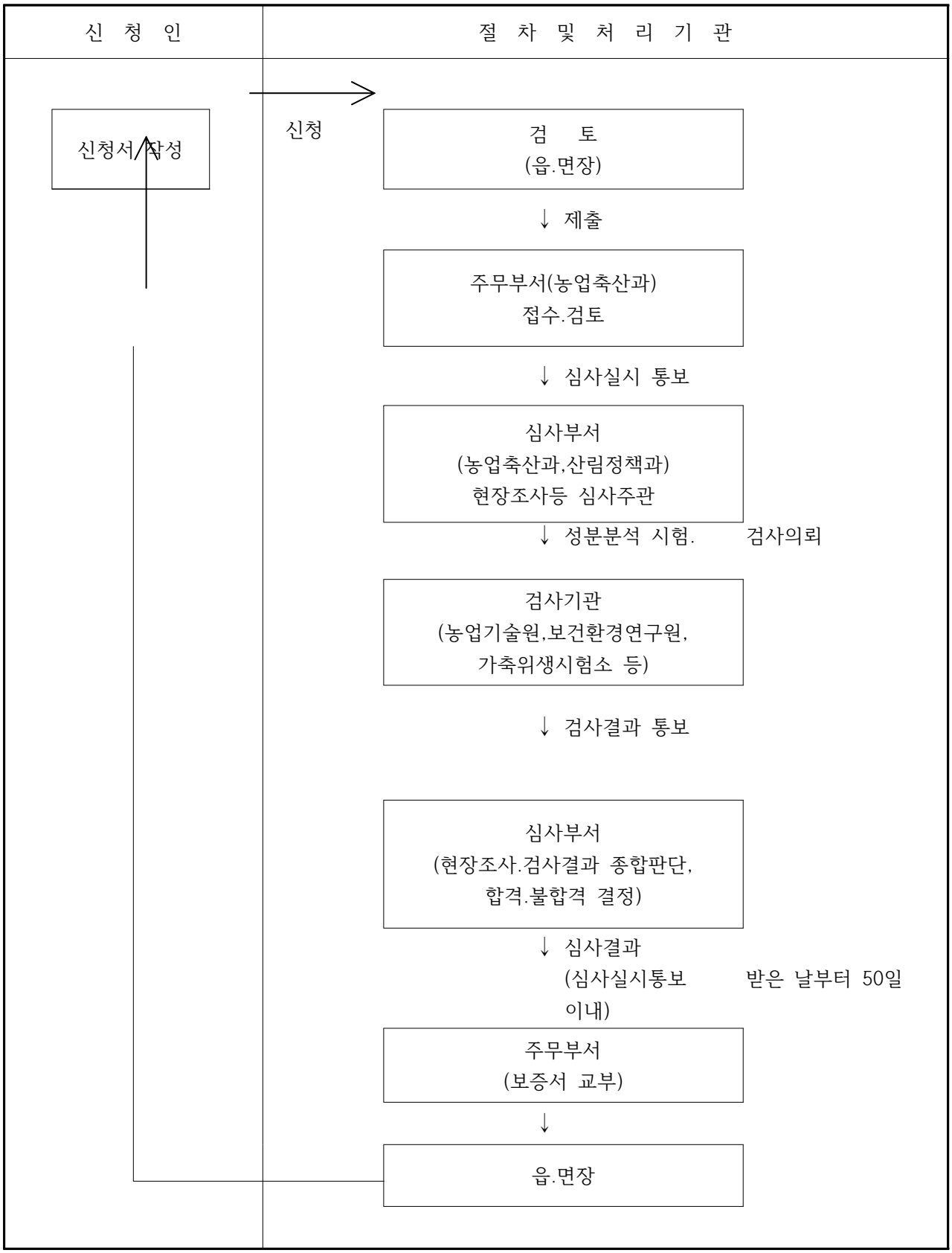
신 청 인
절 차 및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신청
검 토
(읍.면장)
↓ 제출
주무부서(농업축산과)
접수.검토
↓ 심사실시 통보
심사부서
(농업축산과,산림정책과)
현장조사등 심사주관
↓ 성분분석 시험.
검사의뢰
검사기관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
↓ 검사결과 통보
심사부서
(현장조사.검사결과 종합판단,
합격.불합격 결정)
↓ 심사결과
(심사실시통보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주무부서
(보증서 교부)
↓
읍.면장

[별지 제2호서식]

품 질 준 수 각 서

1. 품목(품종) :

2. 표시사항 :

3. 내 용

본인은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 표준규격과 품질보증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반품, 변상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이며, 그에 따른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아드릴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증상표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품질보증 신청품의 생산개요서

1.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 보증신청 품목(품종) 명 :

3. 재배포장별 면적(ha) 또는 가축별 사육두수(두, 수)

4. 생산계획량(톤)

5.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토양관리실적

7.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8.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 실적

※ 단체신청인 경우 생산자별 재배(사육) 내역서 첨부

(뒷쪽)

<품질보증 신청품 생산개요서 기재요령>

○ 재배작기(사육기간)의 형태
- 농산물 : 재배작기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축산물 : 사육기간별로 입식부터 출하일까지 해당월에 표시한다.

○ 토양관리실적
- 농산물 : 파종전 객토, 유기물 투입, 경운, 휴경기간 등 재배토양의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축산물 : 해당 없음

○ 비배관리(사육관리)실적
- 농산물 : 유기질비료 투입량, 화학비료의 사용량, 재배시기별 비배 관리실적을 기재한다.
- 축산물 : 사육시기별 사료의 투입량, 특수방법 사육관리 등을 기재한다.

○ 병충해 및 잡초 방제(가축병 예방접종)실적
- 농산물 : 병충해 종류별, 발생시기별 방제방법에 대하여 유기농법 또는 무농약재배방법 및 관행적인 화학합성농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과 잡초방제에 대하여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제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축산물 : 사육시기별 전염병 등 예방접종 실적 및 가축병 방제를 위한 실적 등을 기재한다.

※ 1. 기타(임산물) 품목은 농·축산물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용지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농특산물가공품품질보증상표(신규—연장—재)사용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자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신 청 품 목			종류		제품단량	
제품생산 개시연도			연간생산능력			
원 료 사 용						
제 품 특 성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산물가공품의 품질보증상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품질준수각서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3. 주원료를 정선산 농특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참조)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성분분석·시험·검사경비는 신청인 부담

(뒷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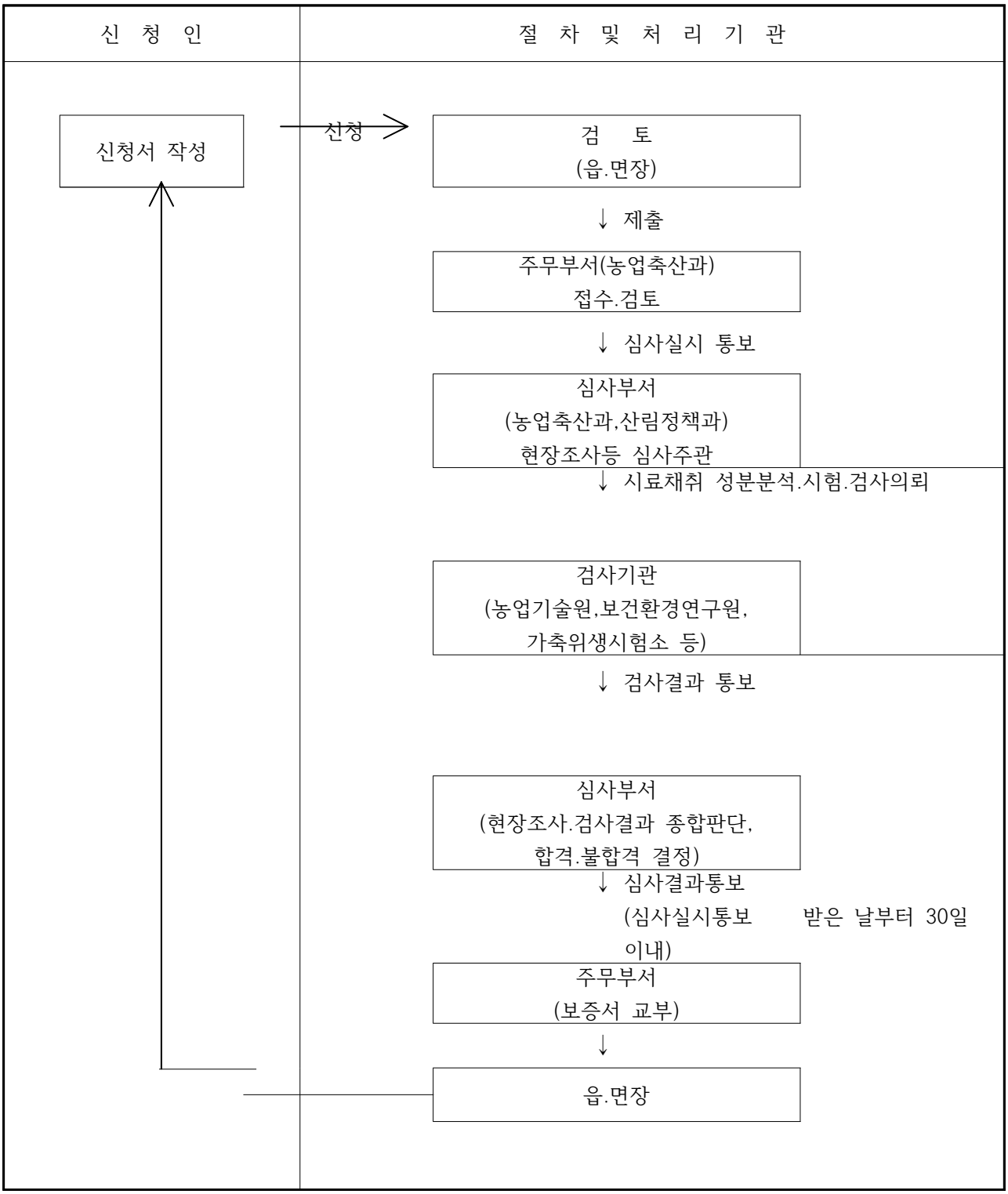
신 청 인
절 차 및 처 리 기 관
신청서 작성
신청
검 토
(읍.면장)
↓ 제출
주무부서(농업축산과)
접수.검토
↓ 심사실시 통보
심사부서
(농업축산과,산림정책과)
현장조사등 심사주관
↓ 시료채취 성분분석.시험.검사의뢰
검사기관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등)
↓ 검사결과 통보
심사부서
(현장조사.검사결과 종합판단,
합격.불합격 결정)
↓ 심사결과통보
(심사실시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무부서
(보증서 교부)
↓
읍.면장

[별지 제5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 공장심사평가서

○ 업체명 :

항 목	평 가	평 가 의 견
합 계		A : 개, B : 개, C : 개
1. 공장입지		
2. 작업장의 환경		
3. 자재의 보관관리		
4. 제품의 보관관리		
5. 제조설비		
6. 주원료의 조달방법		
7. 주요공정관리		
8. 용수관리		
9. 종업원의 위생관리		
10. 폐기물의 처리상태		
11. 유통체계		
12. 제품의 포장 및 표시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농특산물품질시험 및 성분검사 의뢰서

1. 의뢰부서 :

2. 의뢰번호 : 제 호

3. 가검물명 :

4. 가검물 수량 :

5. 시험·검사항목

검사항목									
단 위									
비 고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시험·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심사 종합평가서

1. 신청인(단체)현황

신청자	단 체 명				구 성 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사육두수)		생산지역		생산계획량	
	생산(사육) 소 재 지					

2. 일반·생산·품질관리여건 심사결과

심사일자	심사항목수	평 가 결 과			판 정
		A	B	C	

※ 2항 심사 불합격 경우에는 품질시험 · 검사 생략

3. 품질시험결과

구 분	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 시험 · 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4. 종합판정결과 : 합격( ), 불합격( )

[별지 제8호서식]

농특산물가공품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심사 종합평가서

1. 업체현황

신청인	공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생년월일			
사업개요	시 설 장 비	대 지	건 물	(보관창고)	운반차량		
	주요생산품목			종업원수			
	신 청 품 목	품 목	생산개시일	연 간 생산능력	연 간 생산실적	연 간 판매실적	가동율

2. 공장심사결과

심사일자	심사항목수	평 가 결 과			판 정
		A	B	C	

※ 공장심사 불합격 경우에는 품질시험 · 검사 생략

3. 품질시험결과

구 분	내 용							
기 간								
기 관								
항 목								
기준치								
결 과								

※ 시험 · 검사결과서 사본 : 첨부

4. 종합판정결과 : 합격( ), 불합격( )

[별지 제9호서식]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 심사처리 대장

접 수		심사실시통보		신 청 내 역			결과통보(심사부서)				결 과 처 리(주무부서)					비고
번호	월일	월일	부서명	품 목	신 청 자		월일	(직) 성명	심사결과판정	검사수수료	승인일자	보증번호	보증항목(기간)	사용부적처리내용	통보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별지 제10호서식]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 사용승인서

○ 보 증 번 호 : 품질보증 제 호

○ 제조 업체명 :
(생산조직명)

○ 대 표 자 명 :
(생산자명)

○ 공장 소재지 :
(주 소)

○ 품 목 명 :

○ 보 증 내 용 :

○ 유 효 기 간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결과 당해 품질 표준규격과 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위와 같이 품질보증 농특산물의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별지 제11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

보증 번호	승 인 년월일	보증품목	업체 및 생산자					보증항목 및 표시사항	포장 단량 (kg, g)	수량 (톤)	유효 기간	처분내역 및 년월일
			업체명 (조직명)	농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구성명 (명)	재배면적 (ha)					

[별지 제12호서식]

농특산물 품질보증 상표사용승인 품목 출하내역

보증 번호	승 인 내 용					출 하 내 역		비고
	업체명 (조직명)	농가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승인 기간	품목명	출하량	판매액 (수출액)	
						(톤)	(천원)	

※ ( ) 수출액은 판매액에 포함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증명사진

소 속 :

성 명 :

위 사람은「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뒤쪽)

주 의 사 항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품질보증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표 1]

농특산물 품질보증상표 사용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기준

	심 사 기 준	평점
1. 생산자 자질,조직 및 능력	가. 조직 .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자	A
	나. 조직 .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 단체이거나 전업농어가로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자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지역 특산품으로서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보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
	나. 지역특산품 또는 특정적 재배 생산물로서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차별화가 예상되고 성가도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3, 대외신용도	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A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대체로 높고, 유통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4. 생산포장 입지	가.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보증 신청한 재배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하 “단지”라 한다)이 1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배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A
	나.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단지가 2~3개소 이하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축산물>	
사육시설 (축사)입지	가.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의 확보 및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A
	나. 주변에 오염(토양, 수질, 대기) 영향이 없고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계획량 달성을 위한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고, 집단화가 미흡한 경우	B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임산물>	
산림입지	가. 산림내에 천연적으로 자생하며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A
	나. 산림내에 임지 훼손 없이 자연재배하며 주변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등 오염 및 자연적인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B
	다. 위의 “가,나”에 미달한 경우	C

5. 생산(사양) 기술수준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인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 기술 및 기계화율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이 선진 수준인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사육경험, 지식 및 기술이 선진 수준에는 미달하나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A B C
6.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 사육규모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종자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자재(종자 등)를 갖추고 있거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5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3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5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10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300군 이상 나.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고기 : 비육우 300두 이상,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닭고기 : 육계 10,000수 이상, 계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토종꿀 : 재래봉 50군 이상, 양봉꿀 : 서양봉 100군 이상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A B C
7. 자체 품질 관리 수준	가.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 .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제품 조사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유통중 하자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체로 양호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8. 품질관리 열의도	가. 행정 . 지도 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실행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나. 행정 . 지도기관 및 단체의 교육 . 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영농일지 및 생산, 출하대장 등 각종 서류를 성실히 기록하여 2년이상 보관하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 . 표시적정화에	A B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C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가. 저장(건조 . 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축산물>	A B C
사육시설 및 기자재	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었고, 일부 부족하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한 경우	A B C
10.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보증품에 대한 판매처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출하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거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축산물>	A B C
	가. 도시지역에 판매점(한우고기는 직매점)을 확보하고 냉장 . 숙성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증품의 부위별 . 등급별 진열판매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나. 도시지역에 판매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한 경우 다. 위의 “가, 나”에 미달하는 경우	A B C

2. 합격판정 기준

○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 없어야 함

○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2]

농특산물가공품 공장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항목별 기준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1. 공장입지	○주변에 오염원이 없고 쾌적함	A
	○주변환경이 보통임	B
	○주변환경이 불편함	C
2. 작업환경	○청결함	A
	○보통임	B
	○불결함	C
3. 자재보관 관리	○원료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어 관리상태가 양호함	A
	○보통임	B
	○불량함	C
4. 제품보관 관리	○제품의 보관관리상태가 위생적이고 양호함	A
	○보통임	B
	○불량함	C
5. 제조설비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등이 양호함	A
	○보통임	B
	○불량함	C
6. 주원료 조달방법	○자체생산 또는 계약생산으로 조달함	A
	○생산자의 생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함	B
	○상인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납품을 받아 사용함	C
7. 주요공정 관리	○주요공정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A
	○보통임	B
	○불량함	C
8. 용수관리	○음용수의 수질상태가 양호함	A
	○보통임	B
	○불량함	C
9. 종업원의 위생관리	○종업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위생복착용등 개인의 위생관리 상태 양호	A
	○보통임	B
	○불량함	C
10. 폐기물 처리상태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방치함이 없는 등 처리상태가 양호함	A
	○처리상태가 미흡함	B
	○처리상태가 불량함	C
11.유통체계	○자체 판매망을 확보하여 유통상의 변조등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함	A
	○자체 판매망과 일반 시중 판매망을 병행함	B
	○자체 판매망이 없이 일반 시중 판매함	C
12. 제품의 포장 및 표시	○포장 및 표시가 적정함	A
	○다소 미흡함	B
	○불량함	C

2. 합격판정 기준

○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상 없어야 함

○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

[별표 3]

농특산물 품질보증 번호부여(제11조제1항 관련)

1. 보증번호

품질보증연도	보증품목지정순위	품질보증번호
○ 농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한 연도 “예” 2012년도 ⇒012	○ 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증품목 지정 순위 “예” 1. 사과 ⇒01	○ 연도에 관계 없이 품목별로 품질보증 한 순서에 의한 계속 일련번호 “예” 7번째 보증 ⇒07

2. 보증번호 부여방법

가. 보증표시 및 번호 부여순서

1)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표시 : 품질보증
2) 품질보증연도 : 012(2012년), 013(2013년), 014(2014년)
3) 품목지정번호 : 01(고시된 보증품목 지정순위)
4) 품질보증번호 : 07(품목별 보증 일련번호)
“예” 품질보증 제012-01-07호

나. 보증번호를 이미 부여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재보증시에는 기 부여한 보증번호를 계속 부여

“예” 1) 연 장 : 기부여 제012-01-07호 ⇒ 제012-01-07호
2) 재연장 : 기부여 제012-01-07호 ⇒ 제013-01-07호(보증연도가 다를 경우)

제 정 이 유

○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의 구성(제2조)
- 위원장포함 10명 이내 구성(임명직 3, 위촉직 7), 간사 1인, 위촉직 임기 2년(연임가능)

○ 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선정, 규격결정 및 고시(제7조)

○ 보증상표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제9조)

○ 보증상표 사용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제10조)

○ 보증상표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제13조)

○ 성분분석 등 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등(제14조)